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증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98호

2017. 10. 24.(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7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전정애 여성정책관)

가. 제안이유

-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심리·정서 상담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종료('17.12.31.) 시점이 도래되어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8.01.01.~'20.12.31.)
- 선정기준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는 청소년단체
 - ※ (현)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15.01.01~'17.12.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무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가출청소년의 중장기 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심리·정서·진로 등의 상담지원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민간위탁 개요

-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천원)

소재지	시설규모	시설구성	수용인원	소요예산	
				2017	2018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66, 3층	전체면적(145㎡)	침실 2, 식당 1, 욕실 2, 단체활동실1, 상담실 1, 사무실 1	7명(남)	149,256	151,786

나. 민간위탁 적정성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청소년쉼터의 시설관리·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자립·활동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 조사·검사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이고,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보여짐.
- 또한, 쉼터는 위기청소년의 활동, 학업, 자립 등 청소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며, 쉼터의 운영은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노하우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보다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지역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단위:명)

구 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계	21,852	4,080	1,525	1,065	1,555	771	661	430	102	5,988	504	611	744	779	757	807	1,135	338
	남	9,038	1,721	672	463	613	327	264	170	55	2,479	198	249	288	267	309	343	478	142
	여	12,814	2,359	853	602	942	444	397	260	47	3,509	306	362	456	512	448	464	657	196
9~17세	남	7,586	1,430	571	393	520	280	228	147	45	2,053	162	222	230	219	270	283	401	132
	여	9,959	1,765	682	476	715	360	315	210	38	2,645	248	299	360	413	367	356	542	168
18~19세	남	1,452	291	101	70	93	47	36	23	10	426	36	27	58	48	39	60	77	10
	여	2,855	594	171	126	227	84	82	50	9	864	58	63	96	99	81	108	115	28

[자료출처: 경찰청]

다. 종합의견

- 가출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년의 보호, 상담, 학업유지, 자립지원 등을 수행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소년 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의 최우수쉼터 비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도·감독 및 매년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여 효율성과 도민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016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단위:개소)

구분	쉼터수(119)						최우수쉼터 현 황	최우수쉼터 비 율(%)
	계	일시 (28)	단기(51)		중장기(40)			
			남	여	남	여		
계	119	28	26	25	18	22	41	34
서울	14	6	3	2	1	2	1	7
부산	6	2	1	1	1	1	3	50
대구	6	2	1	1	1	1	2	33
인천	8	2	2	2	1	1	3	38
광주	5	1	1	1	1	1	1	20
대전	6	2	1	1	1	1	5	83
울산	4	-	1	1	1	1	3	75
경기	27	5	7	8	2	5	15	56
강원	5	1	1	1	1	1	-	-
충북	6	1	1	1	1	1	1	20
충남	7	1	2	1	2	1	2	29
전북	5	1	1	1	1	1	-	-
전남	5	1	1	1	1	1	-	-
경북	6	1	1	1	1	2	3	50
경남	5	1	1	1	1	1	-	-
제주	5	1	1	1	1	1	2	40

※ 충북 최우수쉼터(1개소): 청주청소년쉼터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 또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으로 중장기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임.

참고 1 충청북도 청소년쉼터 현황

시설명	유형	면적	입소정원		근무 인원	개관일	위탁기간	운영단체
			남	여				시설장 (대표)
충청북도 증장기 청소년쉼터	증장기	145㎡ (침실2, 식당1, 욕실2, 단체활동실1, 상담실1, 사무실1)	7		4	2009.5.15	2015.1.1.~12.31	이상기 (이건희)
청주 청소년쉼터	단기	284㎡ (침실2, 식당1, 욕실2, 단체활동실1, 상담실1, 사무실1)	15		7	2002.10.21	2015.1.1.~12.31	박광선 (이건희)
청주시단기 청소년쉼터 (여자)	단기	175.2㎡ (침실3, 식당1, 욕실2, 단체활동실1, 상담실1, 사무실1)		15	7	2017. 1. 1	2015.1.1.~12.31	민현진 (심의보)
청주시일시 청소년쉼터	일시	이동형버스			8	2012.12.31	2015.1.1.~12.31	김세희 (박인배)
디딤돌 청소년쉼터	증장기	175.2㎡ (침실3, 식당1, 욕실2, 단체활동실1, 상담실1, 사무실1)		7	4	2012.5.16	2015.1.1.~12.31	한경태 (전용재)
친구 청소년쉼터	단기	175.2㎡ (침실3, 식당1, 욕실2, 단체활동실1, 상담실1, 사무실1)	7		5	2015.9.24	2017.1.1.~12.31	김기태 (이병우)

참고 2 청소년쉼터의 종류 [자료출처: 2017년 청소년사업 지침]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까지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자연형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자연형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참고 3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결과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 평가 개요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평가주기) '06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 실시('16년 5회)
- (대상시설) 114개소 * '15년 하반기 이후 운영 5개소 제외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기간) '16.4월 ~ '16.11월
- (평가내용) 1. 조직 및 운영 2. 이용청소년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인적자원 5. 시설환경 및 안전
6. 지역사회 연계 7. 지속발전 및 특성화노력

□ 평가 결과

○ 등급별 현황

유형	시설 수	'13년	평균	등급별 시설수(비율)						
				최우수 (90이상)	우수 (80~90미만)	보통 (70~80미만)	미흡 (60~70미만)	매우미흡 (60미만)		
일시	이동	7	85.3	85.6	88.7	4(57%)	1(14%)	2(29%)	-	-
	고정	18			84.4	5(28%)	8(44%)	3(17%)	2(11%)	-
단기	남	26	89.9	87.2	86.9	12(46%)	11(42%)	2(8%)	1(4%)	-
	여	25			87.5	7(28%)	15(60%)	2(8%)	1(4%)	-
중장기	남	17	82.7	84.6	83.8	6(35%)	5(29%)	2(12%)	4(24%)	-
	여	21			85.3	7(33%)	9(43%)	5(24%)	-	-
계	114	85.9	86.0	41(36%)	49(43%)	16(14%)	8(7%)	-		

○ 영역별 현황

영역	전체 평균	점수					
		일시		단기		중장기	
		이동	고정	남	여	남	여
A. 조직 및 운영	86.2	79.4	84.0	88.9	89.8	84.0	84.4
B. 이용청소년	74.9	78.3	69.8	78.2	71.5	76.9	76.4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89.1	98.6	90.7	86.9	89.8	85.1	89.5
D. 인적자원	80.6	76.0	75.1	84.6	82.4	79.8	80.6
E. 시설환경 및 안전	94.8	98.0	92.1	96.0	96.9	94.5	92.4
F. 지역사회 연계	85.0	87.4	84.4	87.7	89.0	79.8	81.0
G. 지속발전 및 특성화노력	86.7	90.2	82.6	86.0	90.6	87.1	85.1
합계	86.0	88.7	84.4	86.9	87.5	83.8	85.3

참고 4 관련규정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지휘·감독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5.3.27.)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 「2017년 청소년사업 지침」 474~475페이지

(3)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

(가) 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연장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재계약시에도 2년 이내로 제한

- (재)계약 만료 시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존 운영자도 공모가능)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698호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2017. 12. 31.)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나. 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3년간)
- 선정기준 :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
 - ※ 現 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15.1.1~ '17.12.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주요사업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관리·운영
 - 가출청소년의 중장기 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심리·정서·진로 등의 상담지원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추진일정

- 중장기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월
- 위탁기관 선정 방침 수립 : '17. 10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17. 11월
-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7. 11월
- ※ 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17. 12월

3. 참고사항

- 위·수탁 추진계획(안) 및 관계 법령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
위 · 수탁 추진계획(안)



여성정책관실

충청북도 증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추진계획(안)

「충북증장기청소년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17. 12. 31.)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보고임.

☞ 現, 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17. 12. 31.까지)

1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2 現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대표 : 이건희)
- 수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66. 3층
- 규 모 : 연면적 145㎡(침실 2, 식당, 상담·사무실, 활동실)
- 운영방식 : 가족형
- 위탁내용
 - 충북증장기 청소년쉼터(3년이내 보호)운영
 -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관리 책임 및 인계
 - 수탁단체의 건물 전용면적 일정규모(1인당 11㎡) 이상 자부담확보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 중장기 쉼터 운영 연혁

- ▶ '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모 :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선정
- ▶ 1차 운영('05. ~ '09. 4.) : 한국청소년충북연맹
- ▶ 2차 운영('09. 5~'11.12.) : 재)한국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 공모 선정
- ▶ 3차 운영('12. 1~'14.12.) : 상기재단 재위탁
- ▶ 4차 운영('15. 1~'17.12.) : 재)한국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 공모 선정

※ 2017. 12. 31. 현재 위탁기간 종료

3 위·수탁 추진계획

- 중장기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월
-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 '17. 10월
 - 위탁방법, 위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7. 11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7. 11월
 - ※ 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17. 12월

4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협약 내용 공증
- 위수탁 현황 홈페이지 공고 및 안내공문 발송

<참고자료 : 관련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동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27>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3. 2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